

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제23조(학교의사,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)”는 “제23조(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)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“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.”를 “법 제 15조1항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호는 삭제한다.

제23조제2항 “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”를 “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는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(이하 “간호사“로 한다.)를 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학교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

제23조 3항은 제23조의 4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“ ③ 제1항에” 는 “④ 법제15조에“로 한다.

제2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15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보건교사를 둔다.
2. 36학급이상의 학교(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학급수가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한다.

제2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동일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관할구역에 있는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18조에 따른다.)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2개교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3조(학교의사,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) ①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에 다음과 같이 학교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, 학교약사와 보건교사를 둔다.	제23조(학교의료인 및 학교약사)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는 학교의사(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학교약사를 둘 수 있다.
1.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,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,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을 두고,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.	<삭 제>
2. 9학급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,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, 9학급 미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과 보건교사 1명을 둔다.	<삭 제>
3. 대학(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두는 대학에서는 단과대학), 사범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에는 학교의사 1명 및 학교약사 1명을 둔다.	<삭 제>
4. 고등기술학교, 공민학교, 고등	<삭 제>

공민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각종학교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해당 학교에 준하여 학교의사,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둔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.

<신 설>

-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,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-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는 각각 그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되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는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자(이하 “간호사”로 한다.)를 둘 수 있다.

- ③ 학교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 간호사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

- ④ 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, 학교의사 및 학교 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23조의2(보건교사의 배치 등)

-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

<신 설>

따른 학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보건교사를 둔다.

2. 36학급이상의 학교(병설유치원의 학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되 학급수가 2배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보건교사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,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동일 교육지원청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의 관할구역에 있는 5학급 이하의 학교에 겸임(「교육공무원법」 제18조에 따른다.) 발령을 받아 순회근무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1인이 근무하는 학교는 2개교 이내로 한다.